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 안 번 호	제62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04. 13.	회 부 연 월 일	2022. 04. 21.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재정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으로 변경(안 제4조제3항)

3. 검토의견
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재정 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,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 안 번 호	제63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04. 13.	회 부 연 월 일	2022. 04. 21.

1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(안 제4조의2)

3. 검토의견

-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